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가 227-1우리타워3층 / 전화(02)717-9551 / <http://nofta-ip.jinbo.net>

수 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제 목 한EU FTA비준동의안 심사 관련 의견 제출

연 락 오병욱 019-213-9199 antiropy@jinbo.net

1. 한EU FTA 비준동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귀 위원회에서 요청하신 본 단체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귀 위원회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심사에 적극 반영해주시길바랍니다.

2. 한EU FTA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의견제시 현황

1) 의견제시 방법, 절차 및 횟수

- 2007년 10월 20일,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예상되는 협상 의제와 그 폐해를 정리한 의견서를 공개 배포함

2) 의견 제시한 주요 내용

-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첨부 자료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EU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입장

1) 협상 결과 중 본 단체와 관련된 부분(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한 평가

가. 유럽연합 요구의 일방적 수용

○ 최근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은 미국식 공격주의를 따라가고 있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과거와 달리 유럽연합의 제도와 동일한 지재권 보호를 상대국에게 요구하며, 미국식 FTA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전 유럽연합이 체결한 기본협력협정이나 EU-멕시코 FTA(2000년), EU-칠레 FTA(2002년)만 보더라도 지재권을 적절히 보호한다는 선언적인 문구와 국제조약을 나열하는 정도였음.

○ 추급권 등 일부 요구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견된 유럽연합의 핵심 요구사항-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 포도주와 증류주 외의 농식품까지 지리적 표시의 확대, 지적재산권 집행의 강화 등-은 대부분 관철되었음.

나. 지적재산권은 통상협상에서 다룰 의제가 아님.

○ 지적재산권과 같은 공공정책과 제도가 한EU FTA와 같은 통상협정에서 다루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지적재산권 정책은 한 사회의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으로서 비단 상품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과 요구에 맞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수립될 필요가 있음. 공공정책은 단지 수출의 확대와 같은 상품 시장에서의 무역 자유화와 동급으로 취급되어, 통상협상에서 패키지로 다루어질 성격의 것이 아님. 한EU FTA를 통해 국내 지재권 제도가 변화한다면, 이는 국내적인 요구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외국의 압력과 통상관료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공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나 다름없음.

○ 더 큰 문제는 이후에도 국제협정에 종속되어, 국내적인 필요와 요구에 맞게 스스로의 지적재산권 관련 공공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데 있음.

다. 이용자의 문화향유권 침해

○ 지적재산권 제도의 기본은 '권리'와 '이용'사이의 균형이며, 이러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지재권 제도의 목적인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이 가능함. 그러나 한EU FTA 협정 내용은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상호간에 권리 수준의 향상만을 요구하는 FTA 협상을 통해서 '권리와 이용의 균형'이라는 지적재산권의 근본 원칙이 고려되기 힘든 구조임.

라. 민주주의와 입법권의 침해

○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관련 국제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혀 낮은 수준이 아님. 접근통제적 기술조치 등은 국제 협정에서도 논란이 되어 수용되지 않은 것이며,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안들임. 설사 일부 제도의 경우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도입되어야지 통상관료의 협상에 의해 도입할 문제는 아님.

○ 한EU FTA 협정은 국내 지재권 제도를 대폭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협정 전체에 대한 비준여부를 표시하는 것뿐임. 이는 공공정책에 대해 우리 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임.

○ 이미 국내에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 사법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정, 사법적 집행 조치들이 다수 추가되었음. 이는 일방적으로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 사법 정의를 뒤흔들뿐더러,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같이 국내 법체계에 이질적인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고 있어 한국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음.

<첨부 자료 1>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의견서

<첨부 자료 2>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서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